#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43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이원택・이병진・임호선

최민희 • 윤준병 • 서삼석

문진석 • 허성무 • 임미애

이광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 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매 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

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법률 제 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산어촌 및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제2항제3호에"를 "제7조제2항제4호에"로 한다.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같은 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같음)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 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u> 설> 3.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른 농산어촌 및 인구감 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 는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	음 2	각 호	의	어느	_ 5	トレ	베	해
당	하는	경우	느에	느	해딩	}	가맹	점
의	등록	름을 :	취소	할	수	있	다.	다
만,	제1	호에	해 '	당히	는	경	우에	는
등	록을	취소	하여	네야	한	다.		

1. (생략)

<u><신 설></u>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u>3.</u> (생 략)

② · 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
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7조제2항제4호에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